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 . . (제 회)	

유 선 및 도 선 사 업 법 시 행 규 칙
일 부 개 정 령 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○○○ (행정안전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광역시와 도를 통합한 자치단체 종류로 ‘통합특별시’를 신설하는 「지방자치법」 개정 및 「전남광주통합특별법」 제정에 따른 유·도선 관할사무 개편사항을 반영하고, 행정처분 통지 시 「행정기본법」에 따른 이의신청 안내 명시를 통하여 국민 권익 보호를 도모하려는 것임

3. 주요내용

- 가. 유·도선 안전운항에 필요한 교육의 실시 권한자에 통합특별시장을 추가하는 등 자치단체 종류 신설사항을 반영함(안 제19조제2항)
- 나. 행정처분 통지 서식에 「행정기본법」 제36조에 따른 이의신청 방법(통지를 받은 날부터30일 이내) 및 행정심판·행정소송 절차를 명시함(안 별지 제11호서식)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 예고(2026.00.00.~00.00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9조제2항 중“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”를“특별시장·통합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(이하“시·도지사”라 한다)”로 하고, “시장·군수·구청장”을“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”로 한다.

별지 제11호서식 제4호 행정처분 통지서 중 “이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「행정기본법」 제36조에 따라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「행정심판법」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「행정소송법」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”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9조(안전교육과목 등) ① (생략)	제19조(안전교육과목 등) ① (현행과 같음)
② 행정안전부장관·해양경찰청장(지방해양경찰청장을 포함한다) 또는 <u>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</u> 는 제1항에 따른 유·도선의 안전운항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<u>시장·군수·구청장</u> 또는 해양경찰서장이나 관계 전문기관에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.	② ----- ----- ----- ----- <u>특별시장·통합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(이하 “시·도지사”라 한다.)</u> 는 ----- ----- ----- ----- <u>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.)</u> - ----- ----- -----.
■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규칙 [별지 제11호서식] <개정 2022. 3. 30.> 제 호 행정처분 통지서 귀 사업장은 「유선 및 도선 사업법」 제	■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규칙 [별지 제11호서식] <개정 2026. 00. 00.> 제 호 행정처분 통지서 귀 사업장은 「유선 및 도선 사업법」 제 조제 항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9조에 따

현행	개정안
조제 항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행정처분을 합니다. ※ 이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처분 통지서를 받는 날부터 90일 이내 「행정심판법」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「행정소송법」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	라 위와 같이 행정처분을 합니다. ※ 이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「행정기본법」 제36조에 따라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「행정심판법」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「행정소송법」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

제 호			
행정처분 통지서			
상호(명칭)			
유선장 또는 도선장의 위치			
사업자명(대표자)		생년월일	
주 소			
행정처분 내용			
귀 사업장은 「유선 및 도선 사업법」 제 조제 항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행정처분을 합니다. ※ 이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「행정기본법」 제36조에 따라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「행정심판법」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「행정소송법」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 년 월 일 시장·군수·구청장 해양경찰서장 직인			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행정안전부 재난안전점검과	
연 락 처	(044) 205 - 4268